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12
----------	------

제출일자 : 2026. 3.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선도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운영·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1)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6. 1. 29. ~ 2. 19.)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대상)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

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정 및 해제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지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데 따른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선도와 단속 등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